공고 제 1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3일

양강면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천 *권	천 *권 1964-10-26	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청남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12-23